

서울고등법원 2018. 11. 6 선고 2018나2024347(본소), 2018나2024354(반소) 판결
[매매대금반환 · 매매대금 등 청구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

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C회사

변론 종결 2018. 10. 16.

판결 선고 2018. 11. 6.

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27. 선고 2016가합516153(본소), 2016

가합530623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1,2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: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6. 3.19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D발행의 액면가 10,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56,000주의 주권을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의 나. 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'2. 추가 판단 부분'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 부분1)

가. 피고의 주장

- 1) 이 사건 확약서상 E(현재의 상호는 '주식회사 D'이다) 발행 주식의 매매는 특정물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'현 상태 그대로'(As is condition) 주식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것이다. 따라서 피고는 E 발행 주식을 위 확약서 작성 당시의 상태대로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고, 우발채무의 발생 등 사후적 사유에 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2) H의 채권집행에도 불구하고 F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아 F이 여전히 E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면, 이는 H의 채권집행이 법률상 무효라는 것이므로, E는 H에

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과 같은 액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, E에게 법률상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.

나. 판단

1) 먼저 피고의 위 1) 주장에 관하여 본다.

이 사건 확약서상 E 발행 주식의 매매가 '현 상태 그대로'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3, 1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, 을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(이 사건 확약서에는 우발채무 발생 시 매매대금의 조정에 관한 조항은 없지만, 이와 반대로 '현 상태 그대로'의 주식 매매이므로 우발채무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도 없는바,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위 확약서 작성 당시 매수인인 원고의 입장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다액의 우발채무가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).

2) 다음으로 피고의 위 2) 주장에 관하여 본다.

앞서 살핀 바와 같이 H이 F과의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E로부터 12억 2,500만 원을 추심하였으나, 위 공정증서가 허위로 밝혀져 위채권집행이 무효로 확인된 이상, E가 H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. 그러나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, H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I 이 E 등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'서류상 회사'(Paper Company)로서 실제 사업진행 내역이나 매출실적이 없고 운영자금대부분을 I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였는바, E가 H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, 법적으로 위와 같은 채권이 E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, 실제로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불과하여 E의 순자산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위 채권이 E에게 귀속됨으로써 F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 상당의 손해와 상쇄되어 E에

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신광렬, 판사 전휴재, 판사 신용호

1) 피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1 고지의무의 이행, 2 고지의무의 부존재, 3 '현 상태 그대로' 계약상 의무 완료, 4 우발채무의 부존재, 5 손해의 부존재, 6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한다. 이 중 1, 2, 4, 5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이미 제기하였던 사유들로 본소 청구원인의 부인에 해당하는바, 제1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본소 청구원인을 인정하였고, 항변에 해당하는 6 주장은 배척하였다. 이 법원은, 제1심에서도 피고가 주장한 바있으나 제1심판결문에 그 판단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3 주장과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기한, E의 H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으로 인한 손해 미발생 주장에 관해서만 추가로 판단한다.